

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2026.7.9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



■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

법인명 (인증번호)	대표자 (주소)	처분근거	처분사유	처분내용	인증취소일 (인증제한 기간)
(주)다울푸른도장 (제2022-238호)	이*문 (부산시 북구 호 열로 3*, *01호)	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 1항제3호 및 제2 항	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 으로 다른 법령 에 따른 재정 지 원을 받은 사실	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3년간 인증제한	2026.5.11. (2026.5.11.~ 2029.5.10.)